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5-152호

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호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 공고

3

고양시 공고
제2025-1367호

공릉천 친수시설(발물놀이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2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102-12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 05.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57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102-12 (현천동)	2025-05-20	20100126	옛 포구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3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539번길 9-37 (대자동)	2025-05-20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15390m에 위치한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77-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25-8 (성석동)	2025-05-20	20100126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496-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79번길 17-13 (설문동)	2025-05-20	20110720	은마길 시점에서 79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 745-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48-64 (법곶동)	2025-05-20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13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73-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9-4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9-51	2025-05-16	민원 신청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중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을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48-60	2025-05-16	건물 멸실	2019-11-22	법곶동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 공고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을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고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20.(화) ~ 2025. 6. 3.(화)[14일간]

2.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25. 6. 4.(수) 09:00 ~ 6. 5.(목) 17:00

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다. 장 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4층)

3. 지정 예정 업체 수

구 분	지 역	모집업자	관 할 동 명
계		1	
3권역	일산동구	1	성석동, 정발산동, 마두1동

※ 기존 업체 지정 취소로 인한 재모집으로 기존 업체의 담당구역과 잔여기간을 승계함.

4. 자격요건(지정기준)

가.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붙임 2참고]

5. 선정방법

가. 경합이 있을 경우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별표2에 따라 항목별 득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붙임 3참고]

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의한 시공능력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공사용장비의 순서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되 마지막까지 동점일 경우 추첨한다.

6. 신청 접수시 제출서류

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소정양식) 1부. [붙임 4]

나.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시공기술자 상근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각1부.

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마.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1부

바. 최근 3년간(2022.1.1.~2024.12.31.)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사.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1부.

아.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1부.

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신청서 내 기재)

7. 지정 유효기간 : 2025. 6. 16. ~ 2027. 3. 31.

8. 대행업자 지정 발표 및 계약

가. 선정 발표 : 2025. 6. 13.(금)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나. 지정 계약 : 2025. 6. 16.(월) (10:00 ~ 12:00)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현재 지정업체는 신청 불가합니다.

다. 공사용 장비 및 시공기술자는 업체별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기술자는 전임기술 자격자여야 합니다.

마. 사무실은 건축법 및 다른 법령상 용도에 부합하여야 하며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경우 칸막이로 완전히 구획되어야 합니다.
- 사. 제출된 내용 및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정계약 후에도 지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 지정계약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 대행 기간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 차. 지정신청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카.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공고 할 예정입니다.
- 타. 대행업체 모집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및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 파. 기타문의 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8075-4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 기술 능력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2. 영업 시설	○ 사무실(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축물)
3. 공사용 장비	○ 유압식압축기 1대 이상 ○ 천공기 1대 이상 ○ 콘크리트 컷터기 1대 이상 ○ 진동롤러 1대 이상 ○ 다짐기(램마 80kg 이상) 1대 이상 ○ 양수기(5.0ps 이상 또는 5.5hp 이상) 2대 이상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 2]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항 목	기 준		배 점
총 계			100
1. 시공경험 (40점)	합 계		40
	소 계		2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금액)	3억원 미만	1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
		10억원 이상	25
	소 계		1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건수)	30건 미만	7
		30건 이상 ~ 50건 미만	10
		50건 이상 ~ 70건 미만	13
		70건 이상	15
2. 기술능력 (30점)	합 계		30
	소 계		15
	시공기술자 보유	기준(2인)보유	10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정함)	1인당 가산점 1점 (최고 5점)	5
	소 계		15
	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따른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	5년 미만	3
		5년 이상 ~ 10년 미만	6
		10년 이상 ~ 15년 미만	9
		15년 이상 ~ 20년 미만	12
		20년 이상	15

항 목	기 준		배 점
3. 경영상태 (20점)	합 계		20
	소 계		10
	부채비율 $(= \frac{(\text{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text{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160% 이상	1
		130% 이상 ~ 160% 미만	3
		100% 이상 ~ 130% 미만	5
		60% 이상 ~ 100% 미만	7
		60% 미만	10
	소 계		10
	유동비율 $(= \frac{(\text{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text{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유동비율})})$	80% 미만	1
		80% 이상 ~ 100% 미만	3
		100% 이상 ~ 120% 미만	5
		120% 이상 ~ 140% 미만	7
		140% 이상	10
4. 공사용 장비 (10점)	소 계		10
	굴착기(0.2m ³ 이상)	1대	3
		2대	4
		3대 이상	5
	덤프트럭(2.5톤이상)	1대	3
		2대	4
		3대 이상	5
	감 점	굴착기나 덤프트럭이 임차일 경우 감점 적용	대당 -1 (최고 -5)

※비고

1.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용 장비”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시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한다.

붙임 4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신청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유선)
		생년월일			무선)
	소재지 주 소	사무실			
		창 고			
시공능력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건	천 원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명	시공기술자 경력	년 개월
경영상태	부채비율		%	유동비율	%
희망권역					접수번호
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신청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유선)	
		생년월일			무선)	
	소재지 주 소	사무실				
		창 고				
시공능력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건	천원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명	시공기술자 경력	년 개월	
경영상태	부채비율		%	유동비율	%	
희망권역				접수번호		
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릉천 친수시설(발물놀이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릉천 친수시설(발물놀이터) 인근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하고자 하오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0.

고 양 시 장



1. 제 목 : 공릉천 친수시설(발물놀이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및 내용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046-1번지 일원
- 설치내용 : 공릉천 친수시설(발물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등 다목적 용도 활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1대 개소
- 설치예정일 : 2025년 상반기 중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 (공고일 : 2025. 5. 20.)

5. 공고방법 : 고양시 관보,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라.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보내실 곳 :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충헌빌딩 302호
☎031-8075-2752, FAX:031-8075-4925)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CCTV 설치 위치

□ 설치 위치

연 번	행정동	지번 주소	상세위치	카메라 대수	비 고
1	관산동	덕양구 원당동 1046-1	공릉천 제방도로 ~ 인근	1대	신규설치

□ 위치도



【의견서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업명	공릉천 친수시설(발물놀이터) 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위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내용			
공릉천 친수시설(발물놀이터) 인근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